

목포시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0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6. .

제안자 :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

1. 제안경위

-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
- 자치법규 제·개정에 따른 목포시장의 의견조회
- 제14차, 제15차, 제16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집중토론
- 제17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제안이유

중앙정부의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폐지지침에 따른 조례폐지 사항임.

3. 주요골자

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(대통령령) 및 제2의견국운동지원단규정(총리훈령)이 2003. 6. 23자로 폐지 통보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함.

4. 폐지조례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6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7. 관련부서의견 : 해당없음

8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9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10. 사전협의(승인)사항 : 해당없음

11. 기타참고사항 : 목포시장 의견(별첨)

목포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

목포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